

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신경민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423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8. 7. 5.

발 의 자 : 신경민 · 남인순 · 권칠승
이춘석 · 정재호 · 김성수
박 정 · 한정애 · 이수혁
김해영 · 박광온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화재, 재난·재해, 그 밖의 위급한 상황 발생 시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등 특별한 경우에 소방청장,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관할구역 내 소방대상물 등에 대하여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소방특별조사 실시에 관한 규정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화재 취약 시설의 안전관리가 부실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. 이에 이 법에서 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소방특별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방안전관리의 내실을 기하려는 것임(안 제4 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
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본문 중 “할 수 있다”를 “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